

한국의 울릉도·독도개척사에 대한 일본의 조작행위*

-川上健三와 田村清三郎를 중심으로-

崔長根**

(e-mail : nihonbu@daegu.ac.kr)

目次

1. 들어가면서
 2. 근대조선의 울릉도·독도 재개척의 실체
 3. 근대조선의 울릉도 재개척에 대한 일본의 조작행위
 4. 대한제국의 독도 개척사에 대한 일본의 조작행위
 5.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현재 일본은 「죽도」(한국의 독도에 대한 호칭에 대해 「죽도」라고 표기함)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일본이 이처럼 「죽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연구자들 중에는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갖고 가기 위해 등등 다양한 의견을 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그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본 요인은 독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일본정부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정부가 착오를 불러 온 근본적 요인은 다음 두 권의 선행연구에 있다. 그 하나는 1966년에 집필한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¹⁾이고, 또 하나는 1965년에 집필한

* 본 연구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어졌음.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 전공

1)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古今書院. 『竹島の領有』(川上健三, 1953)를 보완함.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의 『島根縣 竹島の 새로운 研究』²⁾이다. 가와카미는 이 책자에서 「죽도 도해금제와 그 후의 송도」라는 큰 제목과 「한인의 울릉도 통치」, 「한인과 송도(독도)」, 「독도 명칭의 유래」, 「한국인의 송도(독도) 도항」라는 소제목으로 한인의 울릉도, 독도 통치를 부정하고, 「일본인과 송도」라는 소제목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통치를 강조했다. 한편 다무라는 본 책자에서 「죽도의 영토편입과 관리」, 「죽도에 관한 어업행정」, 「죽도경영의 실태」, 「죽도의 광업권」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죽도경영을 과장 확대하는 방법으로 울릉도와 「죽도(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조작하여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는 필자들의 당시 직무가 중앙정부인 외무성 관리와 지방정부인 시마네현 관리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국익을 위해 논리를 조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국적자로서 역사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독도 영유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죽도영토」는 없고, 「독도영토」만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논리의 조작성과 왜곡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두 도서에 의해 조작된 일본적 논리를 분석하여 일본의 「죽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모순에 찬 것인가를 밝혀내려는데 있다.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조작 계보는 평화선 조치 이후 가와카미 겐조(외무성)/다무라 세이자부로(시마네현)에서 조작된 논리는 최근에는 극우인사 시모조 마사오(타쿠슈쿠대학 교수)의 「죽도는 일한 어느 나라의 것인가」³⁾에 의해 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시모조의 영토적 권원조작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는 1880년 이후부터 시작된 한국의 「울릉도·독도 개척사」에 대한 조작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한다. 이는 곧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을 규명하고 한국영토로서의 독도 영유권논리를 보강하는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2. 근대조선의 울릉도·독도 재개척의 실체

(1) 울릉도 재개척 이전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인식

근근대 조선의 동해에는 세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에 울릉도와 우산도 2개섬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1667년 「은주시청합기」를 보면 일본의 서북경

2) 田村清三郎(1965)『島根縣竹島の新研究』島根縣總務課.『島根縣竹島の研究』(田村清三郎, 1954)를 보완한 것임.

3) 下条正男(2004)『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文芸春秋, pp.1-188.

계는 오키도로서, 일본쪽의 바다에 존재하지만, 조선쪽의 바다에 죽도(울릉도)와 송도(우산도, 지금의 독도)가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조선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조선에서나 일본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기록이다. 또한 숙종실록에도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따졌다는 기록이었다. 안용복의 주장에 대해 숙종실록에서 조정은 조선영토가 아니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용복의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죽도와 송도가 일본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고, 무라카와 오타니 두 가문의 어부가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영토로 인식했다는 기록은 없다. 물론 중앙, 지방정부가 영유권 의식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두 가문의 어부들이 「죽도(당시 조선의 울릉도)」에 내왕할 때 「송도(당시 조선의 우산도)」를 이정표로 삼았기 때문에 송도의 형상에 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⁴⁾ 그러나 섬에 대한 영유의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쓰시마 번에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죽도(울릉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쓰시마의 주장은 막부에 의해 수용되지 못했고 조선영토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중앙정부의 막부, 지방정부의 돛토리 현, 한일 간의 외교를 담당했던 쓰시마에서도 하지 않았다. 영유권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은 조선에서만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가 조선영토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조선이 특히 우산도에 대해 영유권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특별히 우산도에 있어서의 경제적 가치 때문은 아니었다. 일찍이 쓰시마 번이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영토수호 차원에서 동해도서였던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정에서는 울릉도를 비웠을 때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울릉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섬이었기에 섬의 형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울릉도는 조선 개국이후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우고 관리했다. 섬을 비운 사이에 1592-98년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들이 침입하기도 했고, 쓰시마 번은 2번에 걸쳐 조선에 대해 울릉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4) 호레키(宝歴) 연간(1751-63)의 가타조노 쓰안(北園通菴) 편저 『죽도도설』에는 송도를 가리켜 ‘오키국 송도’라고 하였으나, 이는 송도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도 아니고 2개의 암초로 된 섬임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죽도가 조선영토이면 송도는 일본영토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당시 일본에서 「송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섬인가를 알지 못했다.

조선조정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하여 울릉도를 영토로서 관리하여 영토주권을 수호해왔다.

요컨대 조선조정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에 대해서도 영토의식을 갖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울릉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송도에 대한 영유권은 주장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 측의 동해에 죽도와 송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섬은 국적을 달리할 수 있는 별개의 섬이라는 인식은 없었고 국적을 같이하는 부자 섬 또는 형제 섬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죽도(울릉도)의 영유권을 한국에 있다고 인정했을 때 송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있다고 인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후술하지만 메이지정부도 동일하게 계승했던 것이다.

(2) 울릉도 재개척을 위한 고종의 독도 영토인식

일본은 명치정부를 설립하여 국가목표였던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대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조선에 대해서는 강화도 조약을 강압한 이후 일본인들의 한반도 진출이 본격화되었고 예외없이 울릉도에도 다시 침입하기 시작했다.

일본들의 울릉도 침입사실을 확인한 조선조정은 울릉도 개척을 시작했다. 조선조정은 이규원을 관찰사로 파견하여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도서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선조정은 동해의 모든 도서를 조사하여 영토로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동해의 도서는 조선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 도서를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일본의 침입으로 영토를 수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규원의 조사보고에 따라 울릉도에 개척민을 파견했다. 그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은 부산영사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과감해졌다.

고종황제가 이규원으로 하여금 울릉도조사를 파견하였을 때 울릉도, 송죽도, 우산도의 존재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즉 동해에 울릉도 이외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의 울릉도와 우산도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삼입지도인 「팔도총도」를 보면 울릉도와 우산도가 거의 동일한 크기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여기서 고종은 우산도도 울릉도와 버금가는 큰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만기요람」군정편(1808년)에서 「우산도는 일본에서는 송도라 호칭한다. 우산도와 울릉도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다.」⁵⁾ 「증보동국문헌비고」(1792년)⁶⁾에서 「여지에서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

5)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145, p.231 참조.

산은 곧 왜가 말하는 바의 송도이다」⁷⁾를 통해 울릉도와 우산도 이외에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죽도 또는 송도라는 명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박석창의 「울릉도도」(1711년)와 김정호의 「청구도」를 통해 울릉도의 부속 섬이 「소위 우산도」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을 것이다. 여기서 「소위 우산도」라고 하는 섬은 울릉도와 또 다른 섬이 아니고 울릉도 주변의 부속 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고종황제는 동국여지승람의 동해의 2섬 울릉도와 우산도 이외에 「소위 우산도」로 표기되는 또 다른 작은 섬이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고종은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우산도와 박석창의 울릉도도의 「소위 우산도」가 동일한 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즉 섬 명칭의 오류를 확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소위 우산도」 즉 지금의 죽도, 그리고 또 다른 세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 즉 지금의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고종을 비롯한 조선조정에서는 울릉도 이외의 섬에 대한 영토의식이 존재했다. 다시 말하면 독도가 조선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규원은 동해도서를 조사할 때 업무태만으로 독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고종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메이지정부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울릉도와 더불어 외 1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고종황제는 동해에 3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해에 2개의 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규원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황성신문」에서 보이듯이 1899년 동해의 도서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다.⁸⁾

(3) 울릉도개척민의 독도영유권 인식과 칙령 41호 「石島」의 생성

중앙에서 파견된 이규원은 울릉도를 조사할 때 울릉도 주변의 바위만 조사했던 것이다. 독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때 조사한 바위와 섬이름은 섬의 크기순으로는 (1)큰바위(大巖) (2) 무지개바위(홍암 : 虹巖) (3) 竹島 (4) 鳥項 순이었다. 그 외에 축기암, 형제암, 시어머니바위(老姑巖), 종바위(鐘巖),

6) 『증보문헌비고』(1908년 간행)는 원래 「증보동국문헌비고」(1792년)에서 인용한 것임,

7)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145, p.231 참조.

8)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899년 5월 배계주가 울릉도도감으로 재임명되었을 때 부산항 세관사를 동행했고, 그해 10월 내부관원 우용정을 울릉도시찰 위원으로 임명하여 한일 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186-187 참조.

장군바위(將軍巖), 투구바위(주암; 冑巖), 꽃바위(華巖), 봉바위(鳳巖) 등을 표기했다.⁹⁾ 이들 섬들은 모두 울릉도 주변에 산재된 암초이다. 암초가 아닌 섬으로서는 竹島와 島項이 있었는데 이들 명칭은 전래되어오던 명칭으로 판단되고 그 이외의 섬 명칭은 전래되어오던 명칭이거나 명칭이 없을 경우는 직접 형상을 보고 지은 명칭일 수도 있다.

울릉도민이 독도에 조업을 나갔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기록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어민들의 독도조업 상황을 기록할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업일지를 남기는 어부는 없을 것이다. 독도를 어느 정도 영토로서 인식했느냐는 문제는 1900년 칙령 41호에서 「석도」라는 이름으로 행정관할구역에 포함시켜 통치했다는 것이 증거이다.¹⁰⁾ 섬의 형상을 보고 지은 이름이 「석도」인 것이다. 독도를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석도(돌로 된 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관할에 포함시킬 정도라면 타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1905년 일본은 편입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1903년부터 나카이 요사부uro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했다고 한다.¹¹⁾ 그때에 한국영토라고 생각되어 한국정부에 대여권을 제출하려고 했다고 한다.¹²⁾ 1903년 시점의 산음지방 일본인들 사이에는 일본영토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이 섬이 한국영토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수 없는 2개의 암초로 된 무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카이가 어떻게 조선영토로 생각된다고 했을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군함 니이타카호가 울릉도를 조사하면서 독도를 조사하였는데, 「울릉도사람들은 랑코도를 ‘독도’라고 쓴(書)다」라고 보고했다.¹³⁾ 대한제국의 공문서상에는 칙령41호에서는 「석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울도군에서는 「독도」라는 호칭으로 공문서에 기록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다시 말하면 울릉도사람들이 독도를 어장으로서 활용하

9) 이규원 관찰사가 그린 「울릉외도」(1882)를 참고함.

10) 「旧韓國官報」第1716号, 光武4年 10月 27日,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192-194 참조.

11) 「란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1904년 9월 29일)」, 최장근(1910) 『일본의 독도·간도침략 구상』 백산자료원, pp.65-67 참조.

12) 奥村碧雲(1907) 『竹島及鬱陵島』, 최장근(1910) 『일본의 독도·간도침략 구상』 백산자료원, 1910년 p.63 참조.

13) 일본군함의 보고는 매우 중요하다. 당시 울도군의 독도인식을 의미한다. 독도라는 이름으로 영토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군함의 보고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14) 울도군에서 독도라고 호칭하여 영토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게 하는 사료이다. 이처럼 울도군에서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증명된다. 이를 부정한다면 타국의 영토를 침략

여 생활환경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울릉도에서는 독도라는 명칭이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년 후 1906년 심홍택 군수가 방문한 일본인으로 부터 독도침탈소식을 접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했을 때 「본군 독도」라고 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된다.¹⁵⁾ 이러한 일련의 사료들로 미루어볼 때 1900년 칙령 41호로 울도군의 행정관할 조치된 「석도」가 울릉도에서는 「독도」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중앙관청 호칭으로는 「우산도」였다. 칙령41호에서 우산도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박석창의 「울릉도도」에서 우산도를 「죽도」에 비견하는 잘못을 범하여 그 후 청구도계통의 지도에서도 이를 답습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칙령 41호에서 「석도」 대신에 「우산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¹⁶⁾ 만일 사용했다라면 청구도나 박석창의 지도에 의해 「우산도」는 지금의 「죽도(땃섬)」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칙령에서는 「석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이다. 즉 울릉도민들이 독도의 형상을 보고 지은 「석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이다. 석도라는 명칭은 울릉도민들의 「돌섬」 「독섬」을 공문서형식으로 만들어 붙인 이름이다. 이에 비해 「독도」라는 명칭은 울릉도민들이 순수하게 부르던 돌섬 혹은 독섬에서 진화되어 정착된 호칭이다.

심홍택 군수는 독도가 울릉도의 외향 100여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¹⁷⁾ 황성신문 1906년 7월 13일에 의하면 대한제국 내부는 독도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동해의 영토범위를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이 200리라고 하여 통감부에 항의했다.¹⁸⁾ 따라서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독도에 대해 일본은 강치를 남획해간 것을 가지고 실효적으로 섬을 관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적 영토침탈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1882년 재 개척으로 울릉도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혼재하고 있을 때 독도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 조선에서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영역의 일부라는 영토로서의 상징적 가치가 더욱 컸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의 발생했던 것이다. 고종황제는 1899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울릉도 이외의 또 다른 섬 독도의 존재에 대한 조사를 보냈다.¹⁹⁾

하겠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15) 최장근(1910) 『일본의 독도·간도침략 구상』 백산자료원, pp.69-92 참조.

16) 최장근(1910) 「대한제국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조치-칙령41호'석도=독도' 검증의 일환으로」, 최장근, 『일본의 독도·간도침략 구상』 백산자료원, pp.83-86.

17)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部外洋百餘里許이옵드니」, 『各觀察道案』 第1冊, 「報告書号外」, 양태진편(1979) 『한국국경영토관계문헌집』 참조. 울릉도에서 독도가 100여리 외향에 있다는 인식은 황현이 집필한 「梅泉野錄」, 「梧下記聞」에도 기록되어있다.

18) 『皇城新聞』 1906년 7월 13일자.

사실 울릉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울릉도 동남쪽에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일본인들에 의해 울릉도 도항 도중에 그 존재가 확인되어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릉도민들의 독도도항은 점차로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의 울릉도에 대한 약탈적인 행위가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도 강하게 했던 요인이 되었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해서 보면 섬의 소유자는 한국임에 분명하다. 이는 부정할 수 없다. 이를 부정한다면 그 자체가 침략적 행위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몰래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했다고 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주 왕래할 수 없는 섬인데, 주인이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몰래 그 섬에 들어가 이용했다고 해서 그 섬이 몰래 들어간 사람의 섬이 될 수 있을까?

이처럼 섬에 대한 도적행위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섬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된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몰래 편입했을 때 조선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항의를 한 것은 타자에게 섬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1905년 일본의 '죽도'편입조치는 한국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은밀히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일본은 조치 후 1년 뒤 1906년 울도군수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편입조치사실을 알렸을 때 한국은 이에 대해 일본 통감부에 항의했다. 이는 영토주권에 대한 수호차원이므로 실효적으로 관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항의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점유를 시도했다면 이것 또한 무효가 되겠다.²⁰⁾

1904년 외무성이 나카이에 대해 영토편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일본내무성은 「내무 당국자는 이 시국(러일전쟁-필자주)에 즈음하여 한국영지라는 의심이 있는 일개의 거친 불모지인 암초를 취하여」²¹⁾라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일본정부 내에서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다.

당시의 독도는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이 아니었다. 한국에 있어서는 독도가 비록 무인도이지만, 국토의 일부라는 경계로서의 상징성에서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영유의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몰래 무인도였던 독도에서 강치를 남획하였던 것이다. 나카이는 불법 남획에서 한국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서 강치잡이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외무성은 무인도라는 것을 악용하여 「무주지」 선점론으로 영토침탈을 시도했던 것이다.

19) 각주 12) 참조.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186-187.

20) 최장근(2005)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pp.33-71.

21) 竹島広報文書科(1953) 『竹島關係資料』第1卷.

일본은 영토편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1905년 영토편입이전에 한국이 영토로서 인식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조선의 영유의식에 관해서는 일본 측의 여러 문건 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 실제로 독도를 관리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한다. 독도는 경제적 활동이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인도가 아니다. 무인도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냥 한국영토의 일부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겠다. 이것만으로도 당시로서는 영토로서 관리한 것이 된다.

일본은 독도의 강치를 은밀히 남획하고 이를 영토관리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타국의 영토에서 침략적으로 강치를 남획하고 이를 영토관리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것은 침략성을 상징하는 제국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3. 근대조선의 울릉도 재개척에 대한 일본의 조작행위

(1) 근대조선 이전의 울릉도 영유에 대한 일본의 조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2번에 걸쳐 쓰시마를 통해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그때마다 조선조정은 울릉도를 영토로서 주권을 수호해왔다. 조선은 영토수호정책의 일환으로 공도정책을 행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영토를 수호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영토론자들은 「조선조정은 울릉도 공도정책으로 영토주권을 포기했고, 일본은 조선이 포기한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 권원을 갖고 있다.」²²⁾라는 것이다.

쓰시마가 조선의 울릉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결국 막부에 의해 1696년 울릉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여 한국영토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토론자들은 100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료조작행위이다. 또한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 중에는 일본지도의 윗부분에 울릉도 독도자리에 ‘죽도’와 ‘송도’를 그려둔 것이 있다. 이러한 지도를 가지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는 영유권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日本與地路程全圖」,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통람도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²³⁾

22) 일본외무성홈페이지, 「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참조,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검색일:2011.8.30).

23) 일본외무성홈페이지, 「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참조,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검색일:2011.8.30).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시대에도 그러했듯이 조선의 영토였던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도항하여 약탈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권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영토침략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2) 근대조선의 울릉도개척에 대한 川上健三의 조작논리

울릉도는 조선조정이 영토로서 단 한 번도 방기한 적 없이 영토로서 관리하여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 한국정부가 한국영토로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가와카미는 울릉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적 권원이 결여되어 있다고 사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영토적 권원이 없다고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울릉도도 한국영토로서 권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논리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가와카미는 「울릉도 통치」라는 제목으로 조선조정의 울릉도 지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안용복사건 이전의 울릉도 통치²⁴⁾에 대해서는 울릉도를 방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 섬을 영토로서 포기한 정책이 아니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타국이 울릉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할 때 그것을 인정했다면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쓰시마 번이 1407년 3월 쓰시마 도주 宗貞茂가 平道全을 조선조정에 파견하여 포로 송환과 더불어 울릉도에 쓰시마 사람을 이주하여 거주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영토주권 표시를 명확히 하여 쓰시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⁵⁾ 이를 보더라도 울릉도를 포기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안용복사건 이후²⁶⁾에 대해서는 공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울릉도를 영토로서 관리하였지만, 안용복 사건 당시는 2년에 1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5년에 1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인들은 입도도 할 수 없었지만 어업자제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영토로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시마 번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조선조정이 일본의 중앙정부인 막부와 외교교섭을 통해 조선영토임을 확인받았던 것이다. 그 이후 일본이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울릉도

24)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竹島の 歴史地理学的研究-』 백산자료원, pp.188-191.

25)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 71.

26)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188-191.

에 침범한 자도 없었기 때문에 5년에 1번으로도 충분하였다면 그것으로 영토 관리가 충분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마저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울릉도의 영토적 권원을 조작하려는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근대조선의 울릉도 이주정책 실행²⁷⁾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먼저 울릉도에 들어가 개척하는 것을 보고 이에 자극을 받아 조선이 후발로 개척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울릉도는 조선영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은밀히 잠입하여 약탈행위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도적행위에 대한 비판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일본인의 영향으로 울릉도를 개척하기 시작했다고 한국측의 영토적 권원을 조작하고 있다.

근대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조치²⁸⁾에 대해서는 조선조정이 울릉도 개척을 실시했지만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사실상 관리가 항시 상주한 것이 아니라 삼척과 평해 등의 연안지역 군관이 필요시마다 왕래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개척에 임했다는 주장이다.

조선조정의 울릉도 관리정책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것으로 영토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가와카미는 울릉도에 대한 한국측의 영토적 권원을 흠집내기 위해 울릉도 관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울릉도 관리²⁹⁾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울릉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한 것은 청일전쟁 이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합병 이후는 郡을 도로 바꾸어 울릉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주장이다. 한일합병 이후는 일본제국주의가 울릉도를 침탈하기 위해 행정을 개편한 것으로 한국이 영토로서 울릉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가와카미는 위와 같이 사실을 조작하여 한국 측의 울릉도개척 사실³⁰⁾에 대해 조선은 울릉도 개발에 소극적이었고, 사실상 울릉도 개발은 농업에 그쳤고, 어업행위는 1905년 일본이 시마네 현에 ‘죽도’를 편입한 이후 시작된 일본 어업을 배워서 1907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측이 일찍이 울릉도를 개척하였지만 독도에 대한 영토적 관리는 없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조선본토에서 울릉도에 도항하는 거리보다 울릉도에서 독도에 항하는 거리가 짧다. 본토에서 울릉도에 도항한 사람은 농업을 위해 도항한 것이 아니다. 섬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어업을 위한 도항이다. 조선본토

27)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188-191.
28)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188-191.
29)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188-191.
30)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188-191.

에서 울릉도에 도항해온 사람이 그 보다 더 가까운 독도도 도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도항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도항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다. 그것을 현재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만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울릉도 거주민들이 어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농업에만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영토적 권원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3) 근대조선의 울릉도 개척에 대한 田村清三郎의 조작논리

다무라는 「조선수로지에서 관계되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³¹⁾라고 하여 조선수로지를 인용하여 울릉도에 대한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을 부정하고 있다.

조선의 울릉도 공도정책³²⁾에 대해서는 조선수로지는 조선이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웠는데 조선인들은 봄과 여름 우기에만 울릉도에 왕래했다는 것이다. 즉 조선이 울릉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울릉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울릉도에 가까운 독도도 관리했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반면 조선이 공도정책으로 섬을 방기 했을 때 오히려 일본인이 울릉도를 관리했다는 주장이다.³³⁾ 메이지 14,5년(1881-1882)에 일본인이 목재벌목을 위해 울릉도에 도항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상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대한 불법적인 약탈행위였다. 또한 1883년 이후에는 ‘재 조선국 일본인 통어장정 및 해관세목“을 조인하여 일본인들의 공식적인 울릉도 도항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³⁴⁾ 이는 조선영토에 대한 불법침입에 속한다. 영토적 권원과 무관하다.

이처럼 다무라는 울릉도에 대한 불법 도항마저도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으로 일본 측의 영토적 권원이라고 주장한다.

4. 대한제국의 독도개척사에 대한 일본의 조작행위

(1) 독도개척사에 대한 川上健三의 조작논리

가와카미는 1905년 일본이 시마네 현에 ‘죽도’를 편입하기 이전에 한국 측이 독도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울릉도 개척에

31)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34.

32)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35.

33)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p.35-36.

34)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36.

도 소극적이었고, 게다가 농업에만 종사하였고 어업에는 종사하지 않았다고 논리를 조작했다.

이번에는 「한인과 송도」³⁵⁾라는 제목으로 가와카미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한국 측이 독도를 직접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의 독도관리 및 경영 그리고 영토인식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독도는 작은 2개의 암초로 되어있다. 따라서 독도를 영토로서 관리했다는 의미는 반드시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만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역사지리서에 포함시켜서 영토로서 인식하여 타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때 영유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독도와 같은 무인암초에 대한 영토관리방법이다.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독도에 서식하는 강치를 잡아 멸종시키는 행위가 영토관리방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가와카미는 「독도」 명칭의 유래에 대한 한국 측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먼저 최남선의 주장³⁶⁾에 대해서는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최남선의 견해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독도라는 명칭은 돌섬이라는 의미의 음을 취한 것이라는 설이 정착되어 있다. 학자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역사학의 발전에 따라 종래에 입장에 잘못되었다면 올바른 인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신석호의 주장³⁷⁾에 대해서는 신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1906년에 한국 측 문헌에 「獨島라고 쓴(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영토로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일본문헌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일본문헌에서 최초로 「獨島라고 쓴(書)다」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곳은 1904년에 기록한 니이타카호의 군함일지이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이 섬을 독도라고 쓴다」는 사실이 일본에도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 현의 영토 편입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다고 한 것은 논리 조작행위임을 알 수 있다.

가와카미는 이처럼 일본이 시마네 현에 ‘죽도’라는 이름으로 편입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한국이 영토로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1905년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일본의 영토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³⁸⁾ 1906년 경에 한국이 獨島라고 쓰게 된 것은 1904년부터 일본인이 한국인을 고용하여 독도에서 강치조업을 한 일본인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1905

35)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191.

36)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91-92.

37)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92-93.

38)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191-193.

년 일본의 불법적인 편입조치에 대한 합법성을 내세우기 위해 조선이 그 이전부터 영토로서 관리해온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는 한인은 ‘獨島라고 쓴(書)다’라고 한 출처는 1904년의 군함 니이타카호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³⁹⁾ 이미 1904년 이전부터 독도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슬러 가면 1882년에 울릉도에 이주한 거주민들이 독도를 알게 되어 그 이후부터 1904년 사이에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05년 일본이 ‘죽도’라는 명칭으로 편입하기 이전에 한인들이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와카미는 「한국인의 송도 도항」⁴⁰⁾에 대해 1907년 이후 일본인어부에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가게 되어 독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을 부정했다. 또한 일본의 해군수로부가 간행한 『조선연안수로지』(메이지40년 간행)에 「메이지 37년 11월 군함 쓰시마가 이 섬을 실사했을 때는 동쪽 섬에 어부용 작은 초가집이 있었으나 풍랑으로 심하게 파괴되어 있다고 한다. 매년 여름이 되면 ‘강치조업’을 위해 울릉도에서 도래하는 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 이들은 섬위에 작은 막사를 준비하여 매회 약 10일간 임시로 거주한다고 한다。」⁴¹⁾고 하는 내용이였다.

이에 대해 다나카 아카마로씨는 메이지 39년 논문⁴²⁾에서 일본인은 1903년부터 강치잡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독도에 도항하였지만 한국인은 이들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1906년부터 도항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독도를 알게 되었다고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일본인의 독도도항⁴³⁾에 대해서는 한국은 울릉도 제주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오징어잡이를 가르친 이후 1907년 독도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일본은 1883년에 254명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일본인들이 일본본토에서 울릉도에 도항하는 과정에 독도를 기항지로 활용했거나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이 독도에 왕래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독도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일본인들이 1883년부터 울릉도에 도항을 하면서 독도를 확인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것과 영토주권과는 무관하다. 일본이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독도를 편입한 것이 1905년이라면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갖고 있었나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1904년에 이미 한국이 ‘독도라고 쓴다’

39) 『軍艦新高戰時日誌』1904年 9月 25日条.

40)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193-194.

41)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194.

42)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195.

43)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197.

는 기록이 일본측 문헌에 등장하고 있고, 또한 1900년 칙령41호로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반면 가와카미는 「일본인과 송도」⁴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일본인은 한국인 보다 먼저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했다고 논리를 조작했다. 즉 일본인의 독도에 대한 도항은 조선이 울릉도 공도정책을 실시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하치에몬사건 때 송도도해를 명목으로 울릉도에 도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때 송도는 일본영토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하치에몬사건 당시의 『죽도방각도』에는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가 그려져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같은 색으로 채색하여 일본영토가 아니고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도항금지령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므로 당시 중앙정부의 영토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도항사건에서 막부가 송도도항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1696년 울릉도 도해금제를 내릴 때 송도도해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당시의 송도는 2개의 암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해면허를 할 만한 가치 있는 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와카미는 안용복사건 이후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거⁴⁵⁾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인이 저술한 책자에서 중앙정부의 인식과 달리 송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해 일본측의 영토적 권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가와카미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전근대에 독도에 한해서는 일본에서 영토의 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국민국가가 성립된 근대초기 까지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다⁴⁶⁾고 주장한다. 즉 작은 암초에 단지 전복이나 강치잡이 정도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진 증거는 없지만 오키 도민이 이용했다고 추측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 측 고문헌에 등장하는 ‘일본의 송도’라는 기록은 일부 민간인들의 영토인식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인식은 아니다. 일부 어부들의 인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일본영토로서 관리한 적극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 측의 관찬문헌에서 동해에 2개의 섬인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2) 독도개척사에 대한 田村清三郎의 조작논리

44)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198.

45)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199.

46) 川上健三著·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백산자료원, pp. 197-199.

다무라는 메이지정부의 ‘죽도’ 영유권인식⁴⁷⁾에 대해 울릉도는 1881년 양국의 교섭으로 한국영토로 인정되었지만, 송도는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 1869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죽도와 송도가 조선영토가 된 시말」⁴⁸⁾, 1877년 태정관문서의 「죽도의 1도가 일본영토와 무관함을 숙지할 것」⁴⁹⁾등에 의하면 메이지시대의 일본정부는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다무라는 「조선수로지에서 관계되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⁵⁰⁾라고 하여 조선수로지를 인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⁵¹⁾에 대해서는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함대가 독도를 발견하여 도명을 정했다. 이처럼 한국이 독도를 발견하여 관리하기 이전에 유럽인에 의해 먼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한국측의 영토적 권원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조작이다. 또한 「메이지 27년(1894년) 1월 14일 산음신문에서는 “오키국 4국 공유하는 어선 改良丸”를 “地夫郡 宇賀村 眞野鐵太郎가 客歲로 빌렸다(借受)”」⁵²⁾라고 하여 다무라는 1894년의 산인신문이 울릉도를 조선영토로서 인정하면서도 울릉도도항 도중에 발견한 리랑코도에 대해서는 조선영토가 아닌 무주지라고 게재했다고 주장한다. 이것 또한 영토적 권원을 결정하는 중앙정부의 인식이 아니고 지방신문의 인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근거없는 신문사설을 영토적 권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小泉憲貞가 저술한 『隱岐誌後編』 제49철 (메이지 36년 9월 25일 간행)⁵³⁾에서는 小泉憲貞라는 사람처럼 당시 일본 측의 민간인들 중에는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영토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정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본정부에서는 일본영토로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무라는 한국 측의 영토인식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민간인 일개인의 영토인식을 가지고 일본 측의 영토적 권원이라고 조작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영토를 비롯한 영토 확장의 붐이 조성되어 동해안을 왕래하던 일본인들 중에는 조선영토였던 울릉도조차 영토개척을 주장하는 자가 속출할 정도였다.⁵⁴⁾

47)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 28.

48) 日本外務省調査部編, 『日本外交文書』 第3卷, 事項6, 文書番号87, 1870年 4月 25日字.

49) 『公文録』 1877年 3月 20日条, 太政官指令文書.

50)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 34.

51)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 34.

52)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 37.

53)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p. 35-37.

54) 武藤平学가 1876년에 일본외무성에 「송도개척안(松島開拓議)」을 제출했는데 그 후에도 몇몇 사람이 울릉도개척안을 제출했다.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174.

이처럼 다무라는 독도와 관련되는 기사라면 무조건적으로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반박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한국측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⁵⁵⁾에 대해서는 역사적 권원은 물론이고 1905년 「무주지 선점」에 의한 일본의 국제법적 영토조치가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으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영토편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일본영토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고, 한국영토에 관한 증거만 존재한다.⁵⁶⁾

독도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가깝다는 지리적 근접성⁵⁷⁾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사람들이 영토적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만으로 영토적 권원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한국측보다 멀지만 강제조업으로 독도를 실제로 관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1903년 이후 일본이 독도에서 강제조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타국영토에 대한 약탈해 해당된다. 영토관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당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말한 中井養三郎의 영토인식⁵⁸⁾에 대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카이관련사료를 아무런 논증 없이 후세가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조작하고 있다.

일본정부측이 간행한 『朝鮮沿岸水路誌』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⁵⁹⁾에 대해서는 일본영토론에 불리한 내용은 수리지편찬자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방식으로 한국측의 영토적 권원을 부정하고 있다. 먼저 『朝鮮沿岸水路誌』(昭和8)와 『本州沿岸水路誌』 모두는 일본제국시대에 출간된 것으로 1905년 ‘죽도편입’을 의식한다면 조선연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선연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1905년 이전의 영유권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울릉도주민」을 임의로 「강제조업자들(일본인에 고용된 울릉도 조선인)」로 해석하는 것은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55)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153.

56) 최장근(2010.8) 「일본의 사료왜곡해석과 독도 영유권의 부정-최신 발굴사료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13-138.

57)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153.

58)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154.

59)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p.154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영토로서 관리했다는 것⁶⁰⁾에 대해서는 독도에 도항하는 목적이 강제조업만을 위한 것이고, 강제조업은 일본인만 한 것으로 조선인은 미역밖에 채취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조선인은 독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조작된 논리로 조선인의 독도도항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제국시대에 일본인 학자가 독도를 한국지리지에 포함시킨 것⁶¹⁾에 대해서는 ‘죽도’ 명칭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학자들을 비판했다. 이는 일본의 저명한 지리학자가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에 대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은 일본영토로서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으면서

이상으로 살펴볼 때 1966년에 집필한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竹島の歴史 地理學的研究』와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의 『島根縣 竹島の新研究』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논리로 사실을 조작하였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들의 조작된 논리는 전후 일본정부, 우익 단체나 우익 정치가들에게 있어서 ‘죽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본연구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독도의 본질적인 면을 보면, 조선은 개국 이래 동해에 2개 섬 우산도와 울릉도를 영토로서 관리해왔다. 여기서 울릉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라서 관리했었고, 우산도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울릉도에서도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선조정이 울릉도에 대해 공도정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우산도를 실제로 관리하는 일은 없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독도인 우산도는 당시로서 경제적 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대국도 없었기 때문에 관념적인 영토로서 관리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일본은 많은 사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울릉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이러한 지위를 흠집 내기 위해 한국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거나 소극적이었다고 조작했고, 또한 일본이 오히려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조작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 보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보다 영토로서 관리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은 의

60) 田村清三郎(1965)「島根縣竹島の新研究」, p.154.

61) 田村清三郎(1965)「島根縣竹島の新研究」, pp. 153-155.

심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부정함으로써 독도의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 40호의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죽도영토편입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사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 측이 관리해온 독도에 대한 영토적 권원을 부정하고 오히려 사료해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독도의 영토적 권원이 일본 측에 존재했다고 사실을 조작했다.

【參考文獻】

- 가와카미 겐조저·권오엽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 -竹島の 歴史地理学的研究-』 백산자료원, pp.13-333.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 양태진편(1979) 『한국국경영토관계문헌집』.
- 최장근(1910) 『일본의 독도·간도침략 구상』 백산자료원, p.63.
- 최장근(2010.8) 「일본의 사료왜곡해석과 독도 영유권의 부정-최신 발굴사료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4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13-138.
- 「旧韓国官報」 第1716号, 光武4年 10月 27日.
- 『皇城新聞』 1906년 7월 13일자.
- 奥村碧雲(1907) 『竹島及鬱陵島』.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 川上健三(1953) 『竹島の領有』 日本外務省.
- 下条正男(2004) 『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親書377, 文芸春秋, pp.1-188.
- 竹島広報文書課(1953) 『竹島関係資料』 第1卷.
-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課.
- 田村清三郎(1954) 『島根県竹島の研究』 島根県総務課.
- 日本外務省調査部編(1870) 『日本外交文書』 第3卷, 事項6, 文書番号87.
- 『各觀察道案』 第1冊, 「報告書号外」.
- 『公文録』 1877年 3月 20日条, 太政官指令文書.
- 『軍艦新高戦時日誌』 1904年 9月 25日条.
- 「김정호」, 「박석창」, <http://ko.wikipedia.org/wiki/>
- 日本外務省ホームページ, 「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검색일:2011.8.30).

要 旨

本研究は19世紀後半韓國政府が日本の鬱陵島および獨島への侵入を備えて開拓を行ったが、戦後日本は獨島の領有権を確保するために獨島の管理は全くなく鬱陵島においては韓國領土としての管理が消極的であったとして獨島の領土的権原を造作している。本研究は川上健三と田村清三郎を中心とし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その理由はこの二人が戦後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論理を造作した者だからである。研究構成についてはまず、近代朝鮮が行った鬱陵島・獨島の再開拓の實體について考察した。第2に、近代朝鮮が行った鬱陵島の再開拓の事実を歪曲してむしろ日本領土としての権原のみ存在するとした造作行爲を究明した。第3に、大韓帝國が日本の領土侵略から國土を守るために行った獨島の開拓および行政措置に対する日本の造作行爲を究明した。本研究の結果として、近代になって鬱陵島を開拓した島民は鬱陵島から見える獨島を生活場として活用していた。つまり鬱陵島韓民が獨島まで往來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で島の形象から獨島という名が生まれた。獨島というのは石でできた島という意味である。大韓帝國はこのような認識で勅令41號をもって鬱陵島、竹島とともに「石島」を領土の一部として行政措置をとったのである。前近代においても朝鮮朝廷は鬱陵島を空島政策をもって空にしていたが、東海に于山島と鬱陵島となる2つの島が領土として存在するという領土認識をもってい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認識は近代になって日本の侵略に備えて鬱陵島はもちろん今の獨島に対しても領土認識をもって行政措置をとっていた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川上健三と田村清三郎をはじめとする日本側は戦後から現在まで獨島に対して領有権を主張するために上述したような韓國の鬱陵島における實効的管理を否定して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論理を造作した。川上は鬱陵島について当時の朝鮮は空島政策をもって島を廢棄したのを日本が管理していたが、幕府の外交政策の失敗で韓國に奪われたと論理を造作した。獨島については日本人が先に1903年から獨島で海驢漁をおこなった。韓國人は日本人に勞働力として雇われてからはじめて獨島を知ることができたとし、日本が韓國より先に獨島を實効的に管理したという論理を造作した。田村は獨島のみを扱っているが、その認識は川上の論理と同じく竹島の日本領土論を造作した。

キーワード：鬱陵島開拓史, 獨島開拓史, 領土的権原造作, 石島, 獨島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